인사규정 시행 세칙

2002. 10. 1 개정 2003. 9. 1 개정 2009. 3. 25 개정 2010. 9. 1 개정 2012. 3. 1 개정 2012. 9. 1 개정 2014. 1. 1

1장 승진임용

- **1조(목적)**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교원의 승진요건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교원 승진임용에 관하여 정관 기타 본교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세칙에 따른다.
- 제3조(청구자격) ①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교원이 청구할 수 있다.
 - 1. 동일 직위에서의 최저 승진 소요 연수를 충족시킨 교원 중에 교원 업적평가를 2회 이상 받은 교원. 단, 실처장 보직수행으로 인한 경우,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 - 2. 현재 직위 임용기간동안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교원
 - 가. 삭제
 - 나.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: 현재 직위 임용기간 중 최근 6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 누적평균 결과 가 750점 이상인 교원
 - 다.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: 현재 직위 임용기간 중 최근 6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 누적평균 결과가 800점 이상인 교원
 - ② 현재 직위 임용기간동안 대학 혹은 학과발전에 대한 기여가 현저하나, 해당 교원 업적 평가 누적평균점수가 미달할 경우, 총장은 해당교원에게 승진청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- 제4조 (숭진절차) ① 제3조의 조건을 충족한 승진임용 대상교원은 승진심사청구서(서식 1)를 교학처를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,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승진심사 청구가 없는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.
 - ② 승진임용 대상교원이 소속한 전공의 교수는 승진임용 대상교원의 현재 직위 임용기간동안의 업적에 대한 추천서를, 실처장 보직교수 및 스쿨원장은 임용기간동안의 업적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, 교학처를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,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,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)는 승진임용 대상교원이 제출한 승진심사청구서와 스쿨전공교수 추천서, 실처장 및 스쿨원장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하여 교원인사위원회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,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)의 평가를 실시하며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교원인사위원회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의 경우,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)의 승진임용심의는 별도 지침에 의해 실시한다.
- ④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(정년보장교원의 경우, 동의결과)에 따라 추천받은 대상자 중최종 승진임용대상교원의 승진을 이사회에 제청한다.
- ⑤ 총장이 승진대상 교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, 최초 심의결과 접수 후 7일내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7일내에 해당교원에 대한 승진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해야한다.
- ⑥ 총장은 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이사회 의결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승진심사 청구는 대상 교원 당 연1회로 하되,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달리할 수 있다. 제5조 (이의신청) 삭제

2장 재임용, 재계약

- 6조(목적)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교원의 재임용, 재계약 심사기준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7조(적용범위) 교원 재임용, 재계약 심사기준에 관하여 정관 기타 본교의 각종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.
- 제8조(심사대상) 조교수 이상의 일반직 교수으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, 재계약의 심사대상이 된다. 단, 전담직 교수의 재임용은 전담직 교수 운영규정을 따른다.
- 제9조(심사기구) 교원 재임용, 재계약 심사기구는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.
- 제10조(재임용, 재계약 심사자료) 교원 재임용, 재계약 심사자료는 교원업적평가 결과자료를 기준으로 하며, 기타 심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 단, 기타 심의자료는 상호 합의하여 임용계약서에 기록 한 것에 한한다.
- 제11조(재임용, 재계약 심사기준) ① 재임용, 재계약 기준은 임용기간 중 교원업적평가에 의한 업적평가 평균 650점/1,000점(총장부여점수 제외) 이상으로 하며 미달될 경우 재임용, 재계약에서 제외할수 있다.
 - ② 대학 혹은 학과발전에 기여가 현저하여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- 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3장 전담직 교수 전환

- **13조(목적)**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6조⑨에 명기된 일반직 교수의 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14조(대상) ①전임교수 중 재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는 2010년 9월 1일 현재 임용기간의 50%이상 남아있는 자의 재임용 심의도래 시 실시한다.
- 제15조(심사기구) 전담직 교수 전환 심의기구는 교원인사위원회로 한다.
- 제16조(전환 기준) ①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는 재임용자의 임용기간 중 교원업적평가 개인영역평가 평균 250점/400점 미달자를 대상으로 한다. 전환심사 대상자들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서면 제출이나 교원인사위원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전담직 교수 전환은 소속 스쿨원장평가(20%)(서식2), 실처장 보직교수 평가(10%)(서식3), 교원인사 위원회 평가(10%)(서식4)와 대상자의 임용기간 중 교원업적평가 총점 평균(60%)을 종합하여 60점 /100점 미만자로 한다(평정표 서식5).
 - ③①과 ②항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에 의해 전담직 교수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. 자의에 의한 전담직 교수 전환 신청은 임용기간 중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임용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. 자의에 의해 전담직 교수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청서(서식 6)를 작성하여 교학처를 경유,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.
 - ④①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양과목 담당 전임교수의 경우, 개인영역평가 점수를 40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한다.
 - ⑤①과 ②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실처장 보직수행을 사유로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, 해당 년도의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적용한다.
- 제17조(처우) ①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기간제 교원이 전담직 교수로 전환되는 경우, 계약제 교원으로 자동 변경된다.
 - ②전담직 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.
 - ③일반직 교수가 전담직 교수로 전환된 경우, 전담직 교수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며 일 반직 교수로 복귀 시 승진임용 청구가 가능하다. 이 경우 전담직 교수 임용기간은 승진임용 소요연 수에 포함된다.
 - ④전담직 교수의 처우 등은 전담직 교수 운영규정을 따른다.
- 제18조(전담직 교수 재임용 및 일반직 교수로의 전환) ①전담직 교수의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, 재계약 절차에 의해 재임용 심사를 받는다.
 - ②전담직 교수의 재임용 기준은 전담직 교수 운영 규정에 의한다.
 - ③전담직 교수 재임용 기준이 충족된 자를 대상으로 일반직 교수로의 전환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칙

()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의 조교수 승진임용 심사 청구자격 점수는 2011년 4월 1일자 승진임용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- ②(시행일) 이 규정의 재임용·재계약 심사기준은 2011년 3월 1일자 재임용 대상자 심의부터 적용한다.
- ③(시행일)일반직 교수의 전담직 교수 전환 심의는 2010년 9월 1일 현재 임용기간이 50% 이상 남은 자의 재임용 심의 도래시 실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3조 ①항 1호의 사항은 이전 승진임용자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칙

①(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1) <개정 2012.02. > 교수 승진심사 청구서

승진심사 청구서

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승진심사 청구자격을 갖추어 교수승진 심사용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본인은 승진심사용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본 서류를 진실하게 작성하였음을 밝히며 거짓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> < 1> 교육·산학·연구·봉사활동 업적 1부 <서식2> 자기발전계획서 1부

붙 임:교수승진심사용서류 1부

제 출 자

쿨	
직 급	
성 명	()

원 인 사 위 원 장 귀하

• 산학 • 연구 • 봉사활동 업적

			1		<u> </u>	<u> </u>	<u> </u>	0 / 1	_=_ (2	
	작성요	령 : 이전	승진일(조고	교수 승진[대상의 경	경우 최초	임용일) 이후	후의 주요업적	을 간략히	기술해	주십시오.
	기구	간 :		. ~							
1.		(강의)홀	발동 영 <u>역</u>	격							
2.	산학	협동 영	역								
3.	연구	및 제설	안실적								
4.	봉사	영역(]	고내・외)							
5.	학교	발전을	위한 입	d적(On	nly Or	ie Item	1 포함)				
3.	리더	십 영역									
7.	상벌	사항									

	작성요령 : 승진 후 교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. 특히, 스쿨(부서)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1.	영역(강의계획, 교수법 개선 방안 등)	
2. {	산학협동 영역(산학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)	
3. (Only One Item	
4. 1	취업률 향상에 대한 공헌 방안	
5. ਵ	승진 후 활동 계획	

(2) 스쿨원장 평가서

스쿨원장 평가서

(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용)

평가대상자	소 속:	직 급:
평가내장자	성 명:	

	평 가 항 목			의 견		
공통	교육활동영역 (강의계획 교수법 개선방안 등)					
00	산학협동영역 (산학네트워크 활용방안 등)					
	연구 및 제안실적					
	봉사영역(교내·외)					
업적	학교발저늘 위한 업적					
	리더십 영역					
	상벌 사항					
	Only One Item					
계획	취업률 향상에 대한 공헌 반안					
	승진 후 활동계획					
	종합의견					
	종합점수	매우 높음(20)	높음(16)	보통(12)	낮음(8)	매우 낮음(4)
	(스쿨기여도)					

※ 종합점수에 반드시 표시요망(미기재시 0점 처리)

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자: (인)

교원인사위원장 귀하

(3) 실·처장 보직교수 평가표

실·처장 보직교수 평가표

(전담직 교수 전환 심사용)

피심사	소 속:	직 급 :
대상자	성 명 :	

				<u></u>	가	<u></u> 점수	(√	丑人	<u> </u>			
	평가항목	10	9	8	7	6	5	4	3	2	1	평가의견
공 통	교육활동영역 (강의계획,교수법 개선방안 등)											
	산학협동영역 (산학네트워크 활용방안 등)											
입 적	연구 및 제안실적											
	봉사영역(교내·외)											
	학교발전을 위한 업적											
	리더십 영역											
	상벌 사항											
	Only One Item											
계 획	취업률 향상에 대한 공헌 방안											
	승진후 활동 계획											
	점수 계								점			

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	월	일	
		제 출 자 :	(인)

교원인사위원장 귀하

(4)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

교원인사위원회 위원 평가표

피심사	소 속:	직 급 :
대상자	성 명 :	

	교기설무			퍋	기간	점수	(√	丑人	()			평괴이건
	평가항목 교육활동영역 (강의계획,교수법 개선방안 등) 산학협동영역 (산학네트워크 활용방안 등) 연구 및 제안실적 봉사영역(교내·외)		9	8	7	6	5	4	3	2	1	평가의견
70												
통												
	연구 및 제안실적											
	봉사영역(교내·외)											
업 적	학교발전을 위한 업적											
	리더십 영역											
	상벌 사항											
	Only One Item											
계 획	취업률 향상에 대한 공헌 방안											
	승진후 활동 계획											
	점수 계								점			

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	월	일	
		제 출 자 :	(인

교원임용심사위원장 귀하

(5) 전담직 교수 전환심사 평정표

전담직 교수 전환심사 평정표

				최초		전딤	¹ 직 전환심사	평정		하위 5%	전담직	
연번	소속	성명	직급	임용일	교원업적 평가	소속 스쿨원장	실처장 보직교수	교원인사 위원	총점 (100점	점수	교수전환 심사결과	비고
					총점(60%)	평가(20%)	평가(10%)	평가(10%)	만점)		ㅁ시 '원기	
1												
2												

(6) 전담직 교수 전환 신청서

전담직 교수 전환 신청서

신 청 자	생년월일	
소속	직 급	
최초임용일	임용기간	
전환 신청 사유		

위와 같은 사유로 일반직 전임교수에서 전담직 전임교수로 전환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_____(인)

교원인사위원장 귀하